# KB스타 전세자금대출(갈아타기)(SGI\_서울보증보험)



#### 대출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서울보증보험(SGI)' 전세자금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 신청하고,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, 다음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
 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함)
  - (2) 임대인이 '임차보증금반환채권' 질권설정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고객
  - (3)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(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전입)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
  - (4) 서울보증보험㈜(이하 "보증보험"이라 함)의 개인금융 신용보험 증권(이하 "보험증권"이라 함) 발급이 가능한 고 객
  - (5) 소득증빙이 가능\*하여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(본건 포함)이 40% 이내인 고객
  - \*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
  - (6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
  - \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취득(상속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인 경우 제외

#### [※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]

- (7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 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- (8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**(배우자** 소득합산 불가)
-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 외한다.
  - (1) 법인
  - (2) 외국인 및 재외국민
  - (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및 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도 불가)
  - (3) 당행 임직원
  - (4) 당행 CSS 10등급 이하인 자
  - (5)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
  - (6) 대출신청일 현재 다른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  - (7)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#### [※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]

- (8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 든 조건부 대출 (예 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- (9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 인 경우
- (10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- (11) 미등기 건물인 경우 (예외사항 미운영)
- (12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- (13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- (14) 근질권설정통지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- (15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(16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(17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#### 대출한도

-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
  - ①~④호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중 적은 금액
  - ① KCB, NICE 신용평점별 최고한도 차등적용
  - ② 임차보증금액의 80% 이내
  - ③ (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)가 시세의 80% 이내
  - ④ 부부합산(결혼예정자 포함) 1주택인 경우 최대 3억원 이내
  -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보증보험 청약 가능 금액 및 신 용평가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에 따름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른다.
 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 - ·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 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 - · 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,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#### 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3개월이상 3년이내(임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함)
  - ※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(묵시적 연장은 2년)이 내로, 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
- 상환방법 : 일시상환

전세자금대출 | 스타뱅킹신청

# 상품안내

#### 상품<del>특</del>징

▫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전세대출상품

#### 대출신청자격
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에 참여하는 타 금융기관의 '서울보증보험(SGI)' 전세자금대출을 당행으로 전액 대환(차주 보유 전세자금대출이 1건인 경우만 가능) 신청하고,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,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
  - (1)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 포함)
  - (2) 임대인이 '임차보증금반환채권' 질권설정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고객
  - (3)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(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전입)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고객
  - (4) 서울보증보험㈜(이하 "보증보험"이라 함)의 개인금융신용보험 증권(이하 "보험증권"이라 함) 발급이 가능한 고객
  - (5) 소득증빙이 가능\*하여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(본건포함)이 40% 이내인 고객
  - \*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
  - (6)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
  - \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취득(상속제외)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

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 제외

#### [※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]

- (7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(가) 재직사실 확인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
- (나)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
- (8) 본인 소득만으로 대출한도 부여가 가능한 고객 (배우자 소득합산 불가)
-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(1) 법인
  - (2) 외국인 및 재외국민
  - (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및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불가)
  - (3) 당행 임직원
  - (4) 당행 CSS 10등급 이하인 자
  - (5)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
  - (6) 대출신청일 현재 다른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
  - (7)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#### 「※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실수요 예외 인정 없음]

- (8)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타행 상환조건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부 대출 (예 : 임차목적물 선순위 말소조건부 등)
- (9)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에 의한 계약인 경우
- (10)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경우
- (11) 미등기 건물인 경우 (예외사항 미운영)
- (12)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신탁사인 경우
- (13) 임차목적물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중 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통해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
- (14) 근질권설정통지 外 방식으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
- (15) 규제대상아파트 보유자로서 실수요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(16) 본 건 이외 진행중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
- (17) 배우자가 분양권(입주권)을 보유한 경우

#### 대출금액

- \*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
  - ①~④호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중 적은 금액
  - ① KCB, NICE 신용평점별 최고한도 차등적용
  - ② 임차보증금액의 80% 이내
  - ③ (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)가 시세의 80% 이내
  - ④ 부부합산(결혼예정자 포함) 1주택인 경우 최대 3억원 이내
  - 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보증보험 청약 가능 금액 및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에 따름
- 「대출이동시스템」 준용시에는 아래 요건을 추가적으로 따른다.
  - (1) 임대차계약 기간 내 이동(신규)시
  - ·타행대출 보유 잔액과 동일금액(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함)
  - ※ 대출잔액의 원금만 대환 가능하며 이자.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고객 부담
  - (2)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시점 이동(계약갱신) 시
  - · "Min(보증기관 보증한도. 기존대출잔액+보증금 증액분)"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

**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**  \* 대출기간 : 3개월이상 3년이내(임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함)

※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(묵시적 연장은 2년)이내로, 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

\* 상환방법 : 일시상환

#### 대출대상주택

- 아파트(주상복합아파트 포함)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(주거용)오피스텔로 하며, 기존대출 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한 물건지여야 한다.
  - ※ 단독, 다가구 미운영
  - ※ 주거용오피스텔: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
  - ※ 연립·다세대의 경우 [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+ 임차보증금] 합계가 시세의 90%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

#### 대출신청시기

- [기존임대차계약] 기존대출 잔여기간 6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- [임대차계약갱신] 기존대출 대출만기일 전 2개월 ~ 15영업일 이내

# 금리 및 이율

### 대출금리

-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잔액기준 COFIX」를 적용하며,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가 고시 하는 「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」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합니다. 신잔 액기준 COFIX와 금융채금리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  - 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
  - (3) 우대금리
  -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: 미운영
  - 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 ·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### 조기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. 부과)
  - ☞ 단.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 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9%) 적용

#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\*)
  - \*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  -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,0%p
- \*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  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 -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 자가 적용되고.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 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 <sub>-</sub>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 -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 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

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

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 이용아내

#### 담보

- 서울보증보험
- \*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

#### 부대비용

▫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 하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 (각각 3만5천 원)	15만원 (각각 7만5천 원)	35만원 (각각 17만5천 원)

- ② 보험료 :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-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비용(3만원)은 고객이 부담
- " 대출 상환시,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

#### 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\*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 -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  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  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  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  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  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
- 휴일 대출 상환
  -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#### 기한연장 관련 안내

- ▶ 가.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.
  - (1) 임차주택이 경매 진행, 압류, 가압류,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. 다만 임차인의 최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사실에 변동이 없는 경우 연장가능
  - (2)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
  - (3) 임차보증금 감액에 따라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
  - (4)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(부도 및 당좌거래정지자, 전국은행연합회 '연체'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거래처 등)
- 나. '가' 요건과 함께 아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하다.
  - (1) 외국인/재외국민 차주
  - (2) 당행 수신계좌 미보유 차주
  - (3) 신용관리대상자 차주
  - (4) 기한연장시 (배우자 포함)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- ※(4)의 예외사항으로 연장하는 경우, 영업점에서 기한연장 가능하다.
- 다.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12영업일 전까지 비대면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.

#### 상품가입채널

- \* KB스타뱅킹
  - ※ KB스타뱅킹 접속경로: 뱅킹 > 상품가입 > 대출 > 대출 갈아타기 > 전월세 > 갈아탈 대출 알아보기
- 대출신청시간: 영업일 09:00 ~ 21:50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- 대출신청기간
  - ·(일반) 기존대출 잔여기간 6개월 + 15영업일 이상 남은 시점
  - ·(갱신) 기존대출 대출만기일 전 2개월 ~ 15영업일 이내
- 대출실행: 영업일 오후 16:00 이전

#### 대출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 영업점(콜센터 포함), 모바일 앱,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# 유의사항 및 기타

#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신 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으로"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###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 항
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(3만원)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费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▮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\*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, 금융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
- "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0177-2호(2025.01.20)]

#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 간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 \* 2025.01.20~2027.01.10

#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 한 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적용여부
대출대상주택 (2024.07.1 0)	*아파트(주상복합아파트 포함),연립주택, 다세대주 택, (주거용)오피스텔로 하 며, 기존대출과 관련된 임 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 한 물건지여야 한다. ※ 단독,다가구 미운영 ※ 주거용오피스텔: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 주 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	*아파트(주상복합아파트 포함),연립주택, 다세대주 택, (주거용)오피스텔로 하 며, 기존대출과 관련된 임 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 한 물건지여야 한다. ※ 단독,다가구 미운영 ※ 주거용오피스텔: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 주 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	미적용

	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 급 가능	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 급 가능 ※ 연립·다세대의 경우 [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 고액 + 임차보증금] 합계 가 시세의 90% 이내인 경 우에만 취급가능	
중도상환수수 료 (2025.01.1 3)	"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 (0.6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%) 적용"	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 환원금 × 수수료율(0.5 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 간(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9%) 적용	미적용
대출금리 (2025,01,2 4)	*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(연 0.2%p),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(연 0.3%p) ※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	*삭제	미적용

## 필요서류

- (1)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)
- \* (2)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분)
- \* (3)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- \* (4) 신청인 자격확인서류
  - (가)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(근로자의 경우)
  - (나) 사업자등록증사본, 소득금액증명원 등(근로자 이외의 경우)
- \* (5) 기타 필요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, 금융거래확인서\* 및 분양계약서 (분양권 잔금대출 확인시) 등
  - \* 발급은행 해당지점에 발급사실, 해당내용을 확인
  - ※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